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 출 일 : 2026. 10. 2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청소년복지 지원법)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정의의 개념 정비(안 제2조)
-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7. 28. ~ 8. 5. (10일간)

나. 협의결과

1)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20. ~ 9. 9.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관계법령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도 관련부서 : 경기도 청소년과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남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미래교육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미래교육과장 방 희 선
	팀장 직위·성명	청소년지원팀장 손 숙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효 진 (031-590-396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이란 -------- ---------- ---------- ----. 2. (현행과 같음)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①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남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붙임1 예산 협의 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청소년 외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산출내역 : 지원대상 × 142,000원× 74%(26년 경기도 평균 신청률)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11세 ~ 18세 등록외국인(168명) 및 국내거소(26명) 여성청소년 총 194명(2026. 6.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연142,000원(매월 11,800원) 지원

○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비용 30%(6,030천원)와 70%(14,069천원)를 분담

□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상위 법(청소년복지 지원법) 근거규정 정비

- 제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 정의의 개념 정비

- 제2조제1호 :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
- 제2조제3호 : “생리용품 이용권”정의

○ 지원대상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도록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함

-제4조제1항제1~3호 : 주민등록자 외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지원 대상 확대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장 방희선

붙임2 입법예고 결과보고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미래교육과-11982(2026. 8. 18.)호와 관련입니다.

2.「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9.(수)(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의견제출 0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청소년지원팀 장	미래교육과장	문화교육국장	전결 2026. 9. 12.
이효진	**손숙희**	**방희선**		**문명우**

협조자 의회법무팀장 김상협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시행 미래교육과-13217 접수
우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정약용도서관 3층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8 팩스번호 031-590-4892 / fghj00@korea.kr / 대국민 공개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미래교육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남양039)

1. 미래교육과-11241(2026. 7. 29.)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경기남양039) 1부. 끝.

여 성 아 동 과 장

주무관	박미연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전결 2026. 8. 5. 배진위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23481 (2026. 8. 5.) 접수 미래교육과-11512 (2026. 8. 5.)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별관 4층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ibicf726@korea.kr / 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남양039</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남양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미래교육과</td></tr>
<tr><td>담당자명</td><td>이효진</td><td>전화번호</td><td>031-590-3968</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7월 29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미래교육과)</td><td colspan="4">○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기본생활 보장과 건강한 성장 지원 도모

○ 상위 법 근거규정 및 정의의 개념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td></tr>
<tr><td rowspan="2">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td></tr>
<tr><td colspan="4">'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td></tr>
<tr><td>검토의견
반영계획서</td><td colspan="4">해당 없음</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05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미연/031-590-3965)

미래교육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미래교육과장
(경
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6-36)[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미래교육과-11150(2026. 7. 28.)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관 직무대리

주무관	송호림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팀장	대결 2026. 7. 30. 박호영

협조자

시행 감사관-8614 (2026. 7. 30.) 접수 미래교육과-11285 (2026. 7. 30.)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rims@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남양주-36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송호림
입 안 부 서	미래교육과	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효진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30.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2026년 7월 30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

(담당자 / 연락처 : 송호림 / 031-590-4719)

미래교육과장 귀하

붙임5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결과

남 양 주 시

수신 미래교육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1. 미래교육과-11150(2026. 7. 28.)호와 관련됩니다.

2.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김빛나**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2026. 7. 28.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8998 (2026. 7. 28.) 접수 미래교육과-11192 (2026. 7. 2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q0249@korea.kr / 비공개(5)